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1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김남희·김선민·송재봉

김정호 • 박상혁 • 이연희

장종태 • 민병덕 • 남인순

이수진 · 김 윤 · 정성호

이기헌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 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,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 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 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(안 제9조제2항 제6호 등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·시기, 주의 사항,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

제26조 단서 중 "제32조제3항에 따른 에방접종의 실시기준 등"을 "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등"으로 한다.

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예방접종의"를 "그 밖에 예방접종의"로 한다.

③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·시기 및 주의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감염병관리위원회) ① (생	제9조(감염병관리위원회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	②
항을 심의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	6.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
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	른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
<u>사항</u>	기, 주의사항, 실시기준과 방
	법에 관한 사항
6의2. ~ 11. (생 략)	6의2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예방접종의 공고) 특별자	제26조(예방접종의 공고)
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	
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임시예	
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	
종의 일시 및 장소, 예방접종의	
종류,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	
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	
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	
만, <u>제32</u> 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	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
<u>종의 실시기준 등</u> 이 변경될 경	예방접종의 실시대상 등
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	
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	
한다.	<u>.</u>

제32조(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) ① · ②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③ <u>예방접종의</u>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예방	접종.	의	실시:	주간	및
실시기준	등)	1	• ②	(현형	생과
같음)					

3	예방접극	종의 실	시	대상 •	시
7) 5	및 주의	사항은	위원	원회의	심
의를	거쳐	질병관	-리청	성장이	고
시한	·다.				

<u>4</u>	<u>그</u>	밖에	예방	접종의	

-.